

대전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1가합109824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피고A

변론 종결2023. 3. 8.

판결 선고2023. 3. 22.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2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2]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주식회사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7. 12. 2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855,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7. 12. 21.부터 2022. 3.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의 대표이사 C은 위 약정에 따라 B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와 B이 작성한 신용보증약정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개별보증용)

제1조(신용보증의 금액과 기한)

① 본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주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드립니다.

신용보증원금	금 팔억오천오백만원정
신용보증기간	2017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종속채무	원고가 채권자에 대해 신용보증원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액(또는 가산금액)과 비용
채권자	한국산업은행

제6조 (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중략)

9.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원고가 신용보증부실사유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

제9조(보증채무이행 및 통지)

①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고는 법령 및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7. 대위변제수수료

제16조(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제10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보증채무 변제

1) 원고는 2017. 12. 2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부천지점에 보증금액을 855,000,000원, 보증기한을 2022. 3. 22.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초하여 한국산업은행 부천지점으로부터 950,000,000원을 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2) 그런데 B은 2021. 7. 15. 사업장 권리침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부실처리 되었고, 한국산업은행 부천지점은 2021. 7. 29. 원고에게 B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신용보증부실발생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21. 10. 22. 한국산업은행 부천지점에 보증채무 545,810,400원을 변제하였다.

다. B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B은 2021. 6. 29. 그 소유의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1. 7. 6.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 및 배당표 작성 등

1)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22. 5. 12. 피고에게 26,000,000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2카단51265호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2. 4. 14. 인용결정을 받았다.

마. B의 채무초과 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추가재산으로 토지 및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소극재산으로 원고와 피고 이외에도 중소기업은행, E,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과 피고의 각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C으로부터 회사운영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B에 26,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B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이후 원고가 2021. 10. 22. 한국산업은행 부천지점에 보증채무를 변제하면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6. 25. B 명의의 계좌로 26,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를 채권자, B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액 50,000,000원, 변제기 2021. 7. 20.(20,000,000원) 및 2021. 8. 20.(30,000,000원), 이자 월 2%(매월 25일 지급)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채권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실제 B에 돈을 대여해 준 금원의 약 2배에 육박하는 5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②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와 변제 방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B에 대하여 대여금에 대한 변제나 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면 피고는 B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통하여 B에 대한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굳이 추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수익자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26,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위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신혜영

판사나광윤

판사김명수

별지